

## 2024. 12월 심의결정 통계

### 1. 업종별 심의내용

결정구분 업종	계	주의 및 경고	광고수정	주의·경고 및 광고수정	광고중지	관계기관 통보	기각
기초재	0	0	0	0	0	0	0
식품·음료	8	0	1	7	0	0	0
가정용품	0	0	0	0	0	0	0
제약(의료기기)	3	0	0	0	3	0	0
건강관련용품	6	0	6	0	0	0	0
화장품·세제	3	0	0	3	0	0	0
일반산업기기	0	0	0	0	0	0	0
정밀사무기기	0	0	0	0	0	0	0
전기·전자	0	0	0	0	0	0	0
수송기기	0	0	0	0	0	0	0
화학·공업	0	0	0	0	0	0	0
건설·건재	2	0	2	0	0	0	0
출판·교육	1	0	0	1	0	0	0
의류·섬유	0	0	0	0	0	0	0
유통	0	0	0	0	0	0	0
금융·보험·증권	0	0	0	0	0	0	0
서비스·오락	0	0	0	0	0	0	0
관공서·단체	0	0	0	0	0	0	0
의료	7	0	0	0	7	0	0
그룹·기타	5	0	5	0	0	0	0
<b>계</b>	<b>35</b>	<b>0</b>	<b>14</b>	<b>11</b>	<b>10</b>	<b>0</b>	<b>0</b>

## 2. 심의결정이유별 내용

결정이유	계
공정성·윤리성·합법성·인간의 존엄성·진실성 위반 표현(4~7조)	36
광고의 품위상실, 선정성 표현(8조, 18조)	0
광고주 불표시(9조)	0
소비자 오도 표현(10조)	32
주장의 무입증(11조)	18
추천, 보증(12조)	0
자료 등의 인용(15조)	0
부당비교 및 배타적 표현(16~17조)	0
비과학적 생활태도 조장(19조)	0
소비자 조사(20조)	0
광고에 부적당한 언어사용(22조)	0
어린이·청소년, 어린이 보호(23조, 24조)	0
경품·할인특매, 사행심 조장, 미끼광고(28조, 29조)	0
광고물의 식별 불가능(30조)	0
식품광고의 소비자 오인 표현(31조)	5
주류·담배광고의 부당표현(32조, 33조)	3
효능효과 과신·과장(34조)	6
화장품광고의 소비자 오인 표현(35조)	0
의약품 및 의료 광고 소비자 오도 표현(36조, 37조)	10
금융·투자자문업 광고 소비자 오도 표현(38조, 39조)	0
통신판매 광고 과장 표현(40조)	0
학원, 학습지 등 광고 과장표현(42조, 43조)	0
대리점 모집 광고 과장표현(44조)	4
부동산 광고 소비자 오도 표현(45조)	2
영화·비디오 광고 부당 표현(46조)	0
기타	0
<b>계</b>	116

※결정이유 건수가 결정 건수보다 많은 것은 한 결정에 2개 이상의 결정이유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임.